

교육부령

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
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국무위원 ○○○ (교육부장관)
연 월 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재정위원회 위원이 심의·의결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, 해당 안건에 대해 제척·기피·회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재정위원회 위원의 제척, 기피, 회피 의무 규정 신설(안 제8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생략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위원의 제척 등) ① 재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)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재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

하지 못한다.

-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신 설>		제8조의2(위원의 제척 등) ① 재		
		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		
		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		
		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		
		척된다.		
		1.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		
		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		
		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		
		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		
		함한다.)이거나 그 안건의 당		
		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		
		의무자인 경우		
		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		
		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		
		우		
		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		
		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		
		또는 감정을 한 경우		
		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		
		·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		
		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		
		있던 경우		
		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		
		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		

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재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.